



제 397회 국회 (임시회)
제5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사업의 공제부금 지원근거 마련 〉

■ 구자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3564호)

2022. 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이 복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사업의 공제부금 지원근거 마련 (안 제21조제1항제25호)	2
※ 참고자료	8
1.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공제)	8
2.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지원 사업(2021년도 제2회 추경)	9
3. 지방자치단체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10
4. 지방자치단체별 가입장려금 지원 내역	11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구자근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1. 11. 26.
3. 회부연월일 : 2021. 11.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 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에 따라 2007년 9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월 5만원에서 100만원의 공제부금을 납부하게 되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등 공제사유가 발생할 시 납입부금에 기준이율의 연복리로 적립된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소득공제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등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음.

그러나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공제부금을 매달 납부하는 것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공제부금 납입액을 정책적으로 보조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움츠러들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제25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사업의 공제부금 지원근거 마련(안 제21조제1항제25호)

개정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용도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¹⁾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납부하는 공제부금의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 24. (생략) <u><신설></u> 25.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② ~ ④ (생략)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 ----- -----. 1. ~ 24. (현행과 같음) 2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상공인공제사업의 공제부금 지원 26. (현행 제25호와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영) ①중앙회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이하 “소기업·소상공인공제”라 한다)을 관리·운영한다.

②소기업과 소상공인공제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돕는 것을 위한 공제제도로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가입자로부터 5만원~100만원의 부금을 납부받아 재원을 조성하고, 소기업·소상공인 가입자에게 폐업, 사망, 노령(만 60세 이상), 퇴임 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했을 때, 납부 부금에 기준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됨²⁾.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 153만개의 가입자가 있고, 이 중 소상공인은 147만개사, 소기업은 6만개사임. 소상공인이 연평균 납입하는 공제부금은 299만원, 평균 가입기간은 44개월이고, 소기업이 연평균 납입하는 공제부금은 363만원, 평균 가입기간은 77개월임.

[표 1] 소기업·소상공인공제 현황

	공제 가입자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공제부금	연평균 납입하는 공제부금 액수	공제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
소기업	63,197개사	1,438,029,400,000원	3,632,351원	77개월
소상공인	1,471,238개사	16,329,740,460,000원	2,987,287원	44개월
전체	1,534,435개사	17,767,769,860,000원	6,619,638원	46개월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약관」 제9조(부금월액), 제17조(공제사유), 제18조(공제금), <별표 1> 공제금 지급기준표 등 참조

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16년 서울 특별시를 시작으로 2020년에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및 10개 기초자치단체³⁾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신규로 가입한 영세 소상공인(매출액 2억원~4억원 이하)에 대해 1년 ~ 2년간 가입장려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참고자료 [3], [4]).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통해 집합금지·집합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중 2021년 7월 이후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신규가입자 약 10만명에 대해 가입장려금 (최대 24만원 = 4만원⁴⁾ / 월 × 6월)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납부해야 하는 공제부금을 법률에 근거하여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율을 제고하여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며, 폐업 등의 어려움이 발생 시 소상공인이 이를 극복하고 재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유사입법례를 살펴보면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7조제2항은 정부는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보조금·출연금을 지원·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⁵⁾. 이외에도 「농어업재해

3) 서울 영등포구, 인천 부평구, 인천 계양구, 인천 중구, 충남 당진시, 충남 보령시, 전남 광양시, 전남 곡성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광군

4) 매월 국비 50% (2만원)와 지방비 50% (2만원)를 매칭하여 월 4만원씩 지원

보험법」 제19조⁶⁾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한편, 개정안 제21조제1항제25호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상공인공제사업의 공제부금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납부하는 공제부금의 지원'으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법률 체계 측면에서 유사입법례인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 자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9687)」⁷⁾ 등에서는 공제의 근거를

- 5)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7조(자본금) ① 공제회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회원 또는 사용자의 부담금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출연금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 ② 정부는 제1항제2호의 보조금·출연금을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지급할 수 있다.
- 6)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재정지원)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운영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을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③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보험료와 운영비의 지원 방법 및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9687)」 제24조②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 지원) ①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제24조의2(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율을 높이기

규정한 법률에 공제료·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규정하고 있음. 이를 참고하여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공제부금 지원 근거를 함께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한 지원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납입부금의 보조에 한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의 공제 가입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⁸⁾.

한편, 기획재정부는 공제회 등 복지금고는 원칙적으로 회원들의 부담으로 설립·운영해야 하고, 퇴직연금적 성격의 과학기술인공제회 외의 상호부조 성격의 공제회에 재정지원을 한 사례가 없으며, 노란우산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운영주체, 가입·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하여 화재공제 공제료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공제료 지원-----.
---	--

8) 중소벤처기업부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 -----. 1. ~ 24. (현행과 같음) 2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u>소상공인공제사업의 공제부금 지원</u> 26. (현행 제25호와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 -----. 1. ~ 24. (현행과 같음) 2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u>소상공인공제사업의 공제부금 가입자 납입액 보조</u> 26. (현행 제25호와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공제에 대해서는 세제 및 운영비 등이 이미 지원되고 있고, 노란우산 공제의 규모·수익 등을 고려할 때 공제부금의 추가지원 필요성이 크지 않으며 지원시 대규모 재정이 부담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65

【참고자료】

1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공제)

□ 제도개요

- (운영목적) 소기업·소상공인 전용 공제제도를 운영하여 폐업·노령 등 경영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기회 제공
- (운영근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 (운영기관) 중소기업중앙회 * 2007년 9월 사업 개시

□ 주요내용

- (가입대상)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사업자 무등록 소상공인 포함)
 - * 제외업종 : 주점업(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장, 도박장, 비의료 안마업
- (납입부금) 월 5~100만원(1만원 단위), 월납 또는 분기납
- (납부기간)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까지(별도 만기 없음)
- (공제사유) 폐업, 사망, 노령(60세 이상), 퇴임(법인 대표자, 부상·질병)
 - * 노령공제 : 만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부금 납부시 지급
- (지급금액) 납입부금에 기준이율로 연복리 적립 지급
 - * 기준이율(2021년 4분기) : 2.2%. 단, 폐업·사망시 2.5%(기준이율+0.3%)
- (기타혜택) 공제부금 소득공제(소득금액에 따라 500만원 한도), 공제금 수급권 보호(압류·양도·담보 금지) * 예금자보호법은 미적용

□ 가입현황(2021년 10월말 현재)

- 공제가입자 216.7만명(재적 152.8만명), 공제부금 22.1조원(잔액 17.4조원)

(단위 : 명, 억원)

구 분	가 입(A)	해약(B)	공제금지급(C)	재적(A-B-C)
공제가입자	2,167,138	158,013	480,965	1,528,160
공제부금	221,692	8,453	38,888	174,350

□ 추진 개요

- (목적)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중층적 피해지원을 위해,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신규가입 지원**

*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폐업·노령 등 경영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기회 제공
: (가입자수) 152만명, (재원) 17조 1,865억원, (수익률) 3.93% ('21.9)

** 2021년 7월 2차추경을 통해 신규예산 편성 (124억원, 지자체 보조)

- (대상) 2020년 8월 16일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중, 2021년 7월 이후 노란우산 신규가입자

- 지자체에서 별도 지원중인 가입장려금 대상자도 포함하여 지원

- (지원) 가입 후 6개월간 최대 월 4만원* 장려금 분할적립(지자체 50% 매칭)

* (예시) 가입자가 최소 금액인 5만원 이상 적립시 정부와 지자체에서 월 4만원 추가 적립

* 지자체 매칭금액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광주·충남·울산은 지자체 1만원 적립 → 총 2만원)

- (규모) 약 10.8만명, 124억 원(지원금 120억원, 사업비 4억원)

* 추경예산 편성시 2만원(국비기준) × 6개월 × 10만명 기준으로 산출했으나 지자체별 재원확보 및 매칭금액 차이 등으로 지원물량 8천명 증가

□ 지원 절차

- (신청) 노란우산 가입경로(은행, 공제상담사, 온라인, 직접방문)를 통해 신청

* 2021년 7월부터 사업공고일 이전 기 가입자는 중앙회에서 신청 동의여부 확인 후 일괄 처리

- (대상확인) 중기부가 보유중인 집합금지·영업제한 DB*를 우선활용하고, 확인이 불가능한 가입자는 중앙회에서 지자체로 확인요청**

* 희망회복자금DB : 집합금지 업체 및 영업제한 업종 중 매출액 감소 업체

** 중기부 DB로 확인이 안된 가입자 중 지원대상 여부는 지자체에서 별도 확인 후 중앙회로 회신(불가피한 경우 개별가입자에게 확인서 발급)

- (현황) 각 지자체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조기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 영세소상공인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시 장려금을 지원
-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어 지역 영세소상공인에 가입장려금의 지원하여 노란우산 가입을 유인·촉진
 - * 2016년 3월 서울시가 처음으로 시행, 2018년 제주, 울산, 경남. 광주 등으로 확산, 2020년부터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모두 시행
- (주요내용) 노란우산 신규가입 소상공인(연매출 2~4억원 이하)에 가입장려금(월 1~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
- 시행지역: 전국 17개 광역시·도 및 10개 기초지자체
 - * 기초지자체: (서울)영등포구, (인천)부평구, 계양구, 중구 (충남)당진시, 보령시 (전남) 광양시, 곡성군, 여수시, 영광군
 - ※ 지방자치단체 장려금 지원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기간 등이 상이함(월 1~5만원, 총예산 483억원)
- (기대효과) 지역 소상공인의 사기를 높이고 사회안전망 확산 등 효과가 높아 매년 지속 시행
- 지난 5년간 노란우산 재적가입자는 2배 이상 증가하여 장려금 사업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산 기여

* 노란우산 재적가입자수 추이(만명)

(2016) 73.9 → (2017) 92.2 → (2018) 109.7 → (2019) 122.4 → (2020) 138.4 → (2021.10) 152.8

지방자치단체	시행시기	지원대상 (연매출)	월간 지원금액	지원기간	2021년(예산)
서울	2016. 3.	2억원	20,000원	1년	8,809백만원
부산	2019. 1.	3억원	20,000원	1년	1,500백만원
대구	2019. 4.	3억원	20,000원	1년	1,235백만원
인천	2019. 1.	3억원	20,000원	1년	3,000백만원
광주	2018. 10.	2억원	10,000원	1년	400백만원
대전	2019. 1.	3억원	30,000원	1년	1,300백만원
울산	2018. 3.	3억원	10,000원	1년	200백만원
세종	2019. 5.	3억원	20,000원	1년	240백만원
경기	2019. 1.	3억원	10,000원	1년	4,800백만원
충남	2019. 4.	3억원	10,000원	1년	600백만원
전남	2019. 7.	3억원	20,000원	1년	414백만원
경북	2020. 1.	3억원	20,000원	1년	1,500백만원
경남	2018. 7.	3억원	20,000원	1년	3,130백만원
제주	2018. 1.	3억원	20,000원	1년	600백만원
강원(각 시군)	2019. 7.	2억원	50,000원	2년 6개월	18,783백만원
충북(각 시군)	2019. 7.	3억원	10,000원	1년	323백만원
전북(각 시군)	2019. 1.	3억원	10,000원	1년	799백만원
전남 광양	2019. 4.	2억원	10,000원	1년	27백만원
충남 당진	2019. 4.	3억원	20,000원	1년	180백만원
인천 부평	2020. 1.	3억원	10,000원	1년	126백만원
인천 계양	2021. 1.	3억원	10,000원	1년	70백만원
전남 곡성	2020. 1.	3억원	10,000원	1년	21백만원
서울영등포	2021. 3.	2억원	10,000원	1년	100백만원
인천 중구	2021. 7.	3억원	20,000원	1년	42백만원
충남 보령	2021. 7.	3억원	10,000원	1년	20백만원
전남 여수	2021. 5.	3억원	10,000원	1년	60백만원
전남 영광	2021. 5.	4억원	10,000원	2년	24백만원
계					483억 300만원

※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사항 변경에 따라, 지원조건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